의안번호	2210716
의 뢰 인	주철현 의원
회 답 일	2025. 8. 5.
추계번호	25A316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 (세제 지원 등)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1]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제2항) 1. 노후 또는 과잉설비(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쇄·감축에 따라 자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또는 양도·양수하는 경우 3. 고효율 또는 저탄소 설비로의 전환을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4. 노후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낮은 설비를 양도하는 경우	재량규정

1)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과세의 시점을 미래로 이연하는 방식의 특례
(예)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과세하지 않고 이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 자료: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24.9.26.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6조 (재정 지원 등)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1.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2. 고부가가치 또는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을 위한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3. 민간주도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4. 석유화학산업 관련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개선, 노후 설비의 해체 및 생산 방식의 전환에 대한 보조금 5. 지방에 대한 석유화학사업자의 핵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입지보조금, 기반시설 연계 투자보조금 등 지원 6.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유동성 부족의 해소를 위한 자금 대출,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7조 (전기요금 감면)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1조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1.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2. 시범설비, 평가시설 등 공용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활용 체계 구축 3.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평가제도 및 우선 구매제도 도입 4. 산업계·학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5. 고부가·탄소중립·친환경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민간기업의 회계상 부채로 과도하게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선하거나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3항)	
6	안 제12조 (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1. 고도화된 공정·설비 운용 및 환경친화적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 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과정의 운영 2.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2]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미래 기술 수요와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과 교육체계 개편 방향 등을 포함한 대책을 제1항에 따른 인력 양성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3조 (고용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확대 적용 2. 사업재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3. 희망퇴직, 순환근무, 휴직 등 일시적인 고용인력 유연화 방안에 대한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사업재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용규모가 축소된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석유화학사업자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8	안 제14조 (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제2항) 1. 석유화학산업 관련 협력업체, 물류업체, 정비업체 등 연관 산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3]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4]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5]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 내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대상 조세 감면 및 납세 유예, 정책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 세제 및 재정 지원 3.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에너지전환 설비 구축 등 기반시설 보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사업재편에 따라 필요한 공동교육훈련센터, 지역 일자리센터 등 고용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3항)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3)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및 융자, 연구개발 지원,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등이 실시됨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소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이 실시됨

5)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이 지원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 (세제 지원 등)	
3	안 제6조 (재정 지원 등)	
4	안 제7조 (전기요금 감면)	
5	안 제11조 (연구개발 지원)	
6	안 제12조 (인력 양성 지원)	
7	안 제13조 (고용 지원)	
8	안 제14조 (지역경제 지원)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6]과, 이에 따른 각종 세제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 개정안에는 재정수입의 감소 요인과 재정지출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의 감소**는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분, 전기요금 및 기술료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임

- **안 제5조**에 따라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합병·분할 및 양도·양수에 대하여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안 제14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세 감면 및 납세 유예를 하는 경우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안 제7조**에 따라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51조[7]에 따라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에 따라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경우 기술료 수입(기타재산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안 제14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일정 지역 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추계기간 동안의 융자 원금 회수액(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등)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재정지출의 증가**는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석유화학사업자와 주변지역 내 소상공인, 석유화학산업 관련 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정 지원분임

- **안 제6조**,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

6) 안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을 의미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7)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재편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증가 요인

구분		내용
재정수입의 감소	국세수입	· **(제5조제1항)**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 · **(제5조제2항)** 석유화학사업자의 노후·과잉설비 폐쇄·감축으로 인한 자산 손실 등에 대한 손비처리, 과세이연 등 특례 적용 · **(제14조제2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대상 조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 세제 지원
	세외수입	· **(제7조)**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 **(제11조제2항)**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 **(제14조제2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 상환 유예
재정지출의 증가		· **(제6조제1항)** 사업재편의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단기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자금 대출 및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 · **(제7조)**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 **(제11조제2항)**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관련 민관 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 **(제12조제2항)** 석유화학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추진 · **(제13조제2항)** 사업재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 · **(제14조제2항)** 석유화학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강 등 지원

❑ 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재정수입의 감소액과 재정지출의 증가액을 합산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 각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세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대상이 될 시설투자비나 연구개발비, 노후·과잉설비 감축에 따른 손실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손금산입 기준 등도 가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고 제정안의 내용과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수입 감소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제 지원 사항*과 유사한 취지로 旣 운영 중인 조세지출 항목이 있는 경우 감면 실적 등을 참고하여 추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현행 조세지출 항목 중 제정안에 따른 세제 지원과 유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①설비의 폐쇄·감축에 따라 자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고효율 또는 저탄소 설비로의 전환을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③노후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낮은 설비를 양도하는 경우 등

○ **세외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감면 기준 및 감면율,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준·범위 및 기술료 감면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 감소액을 추계할 수 없음

○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사업자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기준, 기간 및 범위와 민관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실시 계획, 전문인력 양성 및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해당 내용이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고 사업의 내용 및 예산 규모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출 수준 또한 국가재정 여건 및 정부의 재원 투입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제정안의 규정에 대하여 기 실시 중인 유사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 제11조(연구개발 지원)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R&D 사업을 실시 중이며, 2025년 예산은 총 867억 2,600만원임

○ 고용노동부의 경우 제정안 제13조(고용 지원)와 관련하여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해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나,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거나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일자리전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은 총 846억 6,000만원임(예산현액 기준)

  * [참고자료 1] 석유화학산업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

○ 또한, 제정안 제14조(지역경제 지원)와 관련하여,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및 과세 특례 등이 적용되고 있음

* [참고자료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제도 현황

❑ 이에 제정안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 지원, 전기요금 및 기술료 감면, 보조금 및 연구개발·고용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과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석유화학산업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명(회계, 코드) -내(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2025년도 예산(2차추경)[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필수전략기술고도화를 위한 고부가 정밀화학소재개발사업 (일반회계, 3541-350)	국가필수전략(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소재 개발	4,045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재도약 (일반회계, 3541-370)	범용소재 중심의 고기능·신기능 탄성소재 기술개발	4,000
	우주항공방산용실란트소재 초격차기술개발실증사업 (일반회계, 3541-408)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의 국산화를 위한 초격차 제품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	2,500
	글로벌 재활용 규제대응 플라스틱 밸류업을 위한 혁신기술개발 (일반회계, 3541-317)	탄소중립,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밸류체인 지원으로 석유화학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	1,200
	소재부품기술개발 -고기능·친환경·범용소재 (소특회계, 3231-302)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 완화, 탄소중립·친환경 전환에 대응 가능한 고부가 소재·부품 기술을 확보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	52,421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석유화학분야 (기후기금, 6431-590)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제조업의 그린전환 및 2030 NDC 달성에 기여	18,150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NCC 공정개발 (기후기금, 6431-595)	무탄소 연료기반 공정기술을 열분해공정에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및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4,410
	합계		86,726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보기금, 1045-350)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휴업수당 등) 일부 지원 * 사업재편승인기업(과잉공급 해소형)의 경우 매출액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적극 인정	81,318
	산업·일자리전환지원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기후기금, 6332-304)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사업주의 원활한 산업·일자리전환과 고용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직무전환 훈련 또는 전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3,342
	합계		84,660

주: 1) 각 사업의 예산 중 제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만 발췌한 것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제도 현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❶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①보조율 우대*, ②의무투자 요건 완화(대기업 300억→150억), ③타당성평가 기준점수 완화(60점→50점), ④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30명→10명) * (대기업) 설비 3~8% → 11% (중견기업) 입지 10~20% → 25%,설비 5~11% → 19% (중소기업) 입지 9~40% → 50%, 설비 7~14% → 24%
❷ 정책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정책자금 지원 – 산업위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①경영애로 사유 발생 인정, ②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중소기업)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또는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 (소상공인)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 10% 이상 감소 – 중소기업 : 한도 10억원, 5년(거치2년), 중진공 정책자금 금리+0.5%p, 소상공인 : 한도 7천만원, 5년(거치2년), 소진공 정책자금 금리
❸ 보통교부세	• 지자체 재정수요금액에 산업위기지역 시책수요* 금액을 가산 * 동종 지자체(광역·기초)별 1인당 일반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등) x 생산가능 인구 x 120%
❹ 법인세·소득세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❺ 과세 특례	• 1인당 임금총액 감소(예 : 근로시간 단축, 상여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와 근로자 시간당 임금을 축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소득세액에서 공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중견기업도 동 특례 대상에 포함
❻ 국세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2년),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기간 연장(2년)
❼ 관세조사	• 중소기업 정기 관세조사(4년 주기) 유예(1년), 관세 납부기한 연장(15일→1년)·분납 허용(최대 1년 범위 내) 등 관세청 세정지원
❽ 공유수면 점·사용료	• 해수부 및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 징수하는 점·사용료 50% 감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위기지역 지원 내용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1개월)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15~55%		– 5년간 훈련비 5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가능
	생계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체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소득요건 면제
생활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3인가구 중위소득 1/2 이하 ('25년 월 252만 원)		(생활안정자금) 4인가구 중위소득 1/2 이하 ('25년 월 305만 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총 2,000만 원(2종류 이상 융자 시)		총 3,000만 원(2종류 이상 융자 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6년(거치 1년~2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1인 이상 기업도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2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1년간 월임금 50%(대규모기업 1/3)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